

「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5년 7월 7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5년 7월 8일

라. 상정일자: 2025년 7월 16일

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감사담당관 이 순 애

나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「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」에 따라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 범위 및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개정하여 소극 행정 요인을 개선하고 부실시공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 - (당초) 총공사비 5억원 이상 건설공사(구미시 발주, 준공일부터 1년 이내)
 - (변경) 구미시(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)가 발주하는 건설공사
- 부실공사 신고기한 개선(안 제9조제3항)
 -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종료일
-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(안 제2조, 제4조~제6조, 제10조, 제12조, 제13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건설기술 진흥법」,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- 합 의 :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 범위 및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개정하여 소극 행정 요인을 개선하고 부실시공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기존 조례에 따르면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를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및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항만을 접수하도록 규정하여 이후 발견한 부실시공은 기한 경과를 이유로 신고접수를 제한하는 등 소극행정 유발 및 시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음.
- 이에,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적용범위를 모든 구미시 발주 건설 공사로 확대하고, 신고 기한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규정하여 공공건설의 책임성 강화와 신고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또한, 집행기관에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한 아시아육상경기장 관련 시설에서 발생한 다수의 하자 발생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끔 향후에는 단순한 점검이 아닌 감사담당관 차원의 사전 예방 중심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 략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